

#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

## 1. 개정이유

산림보호구역내 치유의 숲 조성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행위 허용(안 제3조제2항제19호)
- 산림보호구역내에서 치유의 숲 조성행위를 행위제한에서 허용함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 : 예정
- 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완료

대통령령 제 호

##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

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9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조성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